

○이용계약에 관한사항○

제1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가. 계약목적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나. 계약기간

- ①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자를 계약하며,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. 단,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 또는 등급변경이 된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다. 계약 준수사항

-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 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.
- (단, 계약서에는 기간, 급여종류, 급여비용, 비급여, 개인정보보호, 분쟁해결,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)

제2조 (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)

[첨부 1]

□노인장기요양기관 (재가기관) 월 한도액(2026년 기준) (단위: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
□ 본인부담금 내역

기초수급자	감경 60%	감경 40%	일반수급자
0%부담	6%부담	9%부담	15%부담

[첨부 2]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(2023년 기준)

구 분	금액	구 분	금액
30분 이상	17,450원	150분 이상	50,640원
60분 이상	25,320원	180분 이상	57,020원
90분 이상	34,120원	210분 이상	63,530원
120분 이상	43,430원	240분 이상	70,080원

제3조 (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)

- 1)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
 -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, 인지활동지원, 정서지원, 일상생활지원, 개인 활동 등을 포함한다. (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)
 -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, 위 [첨부1]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.
 -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.

제4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- 1)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알 권리
- 2)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
- 3)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4)급여제공에 대한 내용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)급여제공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6)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급여 이용 및 급여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
- 7)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
- 8)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무 및 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의무
- 9)이용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
- 10)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11)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제5조 (계약 해제)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1)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4)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5)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6조 (본인부담금 감면 절차)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.

- 1)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를 신청한 날부터 7일(공휴일은 제외 한다)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
 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0조에 따른 대상자 증명서와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
 -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: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
 - ③ 소득·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: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2)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3)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7조 (영업시간)

사업실시지역	(음 성 군 및 인근) 전지역	
영업일 (영업시간)	평 일	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
	토요일	휴 일
	일요일 및 공휴일	휴 일

-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,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.
-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,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변경할 수 있다.